

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시상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생의 교내 우수논문을 선정·시상함으로써 내실있는 학문풍토를 이루며 연구의욕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심사대상) 심사대상은 학위청구논문 중 졸업 당해 연도의 최종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한다.

제3조 (선정절차) ① 우수논문 추천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만장일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추천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과 6월 중에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추천서와 논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우수논문 선정은 각 대학원 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한다.

제4조 (심사위원회) ① 우수논문 심사는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한다.

② 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에서 각기 1편을 선정할 수도 있다. 다만,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 (통지) 심사결과는 논문을 제출한 자와 지도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심사기간) 위원회는 매년 1월과 7월 중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7조 (시상) ① 선정된 우수논문에 대하여는 상장(별지1)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.

② 시상의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 중 학위수여식에서 하기로 한다.

③ 교내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 본교 우수논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.

제8조 (준용규정)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, 기타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내규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각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